

언론과 언론인의 윤리

때 : 2002.5.17~18

장소 : 서귀포 KAL호텔

주제발표 : 성병욱(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최근 윤태식 게이트의 패스 21에서 홍보성 기사의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액면가 내지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산 언론인 몇 명이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스포츠신문 간부와 영화담당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이 불거져 언론과 언론인이 도매금으로 창피를 당했다.

3년 전에는 「언론문건사건」으로 인해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먹칠을 당했다. 한 기자는 여당 중진에게 소속언론사를 포함한 언론계를 해코지하는 문건을 만들어 보내고 다른 한 기자는 이 문건을 훔쳐 평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는 야당의원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최근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이사 집에서 발견된 언론개혁 등의 문건 작성자도 또다시 지방지의 기자로 밝혀졌다. 이들 사건은 언론인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안겨 주었다.

얼마 전에는 한 중앙지 경제기자가 특정기업의 제품 개발 정보를 보도에 앞서 동생에게 알려줘 증권투자자로 큰 시세 차익을 남겼다가 유죄판결까지 받은 일도 있었다. 이 모두 언론인의 윤리·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상황이 1987년 6.29 선언이후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면서 우리언론의 영향력과 역할도 두려울 만큼 강대해졌다. 그에 비해 우리 언론과 언론인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만큼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를 되돌아 볼 때 솔직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연구와 준비도 모자라고 언론들의 책임의식과 도덕성도 미흡

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사 나름대로는 언론인의 윤리와 도덕성을 고양하는 한편 정정과 反論보도에 인색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언론의 취재원이나 수용자들은 언론측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새에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정정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손해 배상 청구소송, 그리고 언론인의 위법·비리에 대한 소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법관들 간에 언론을 길들여야 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억측마저 나돌 정도다.

이렇게 우리 언론과 언론인은 보도의 윤리 및 책임과 언론의 품위와 도덕성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언론계내에선 촛지 수수풍토가 크게 정화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솔직히 말해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액수는 다소간에 취재기자들에게 돈이 오가는 풍토가 보편화돼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것이 90년대 초의 수서사건 기자금품수수과동, 보사부 출입기자단 촛지사건 등의 충격을 거치면서 만연했던 촛지 수수 풍토가 상당히 개선됐다. 1990년대에 여러 언론사가 자체 윤리 강령이나 규범을 제정하고, 기자협회와 언론노련 차원의 감시활동 등이 기자들의 촛지 풍토를 고쳐나가는데 기여했다. 대통령 촛지제공이 사라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언론계에선 적어도 돈봉투가 오가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고들 자부하던 때가 있었다. 명절의 작은 선물이나 흑시 상품권 같은 것은 몰라도 돈이 오가는 일은 거의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자기 암시에 빠져 있었다. 필자도 언론계 내·외 사람들과 이 문제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면 으레 선물이나 향응, 골프대접 같은 것은 몰라도 돈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곤 했었다.

그러나 패스 21사건과 스포츠지 스캔들로 언론인의 촛지 수수 풍토가 개선됐다는 주장은 무색하게 돼 버렸다. 실제로 한국언론재단이 전국 신문·방송·통신 기자들을 상대로 작년에 조사한 의식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어떤 형태로든 촛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63.5%, 받지 않은 사람이 36.5%로 나타났다. 어떤 종류의 촛지

수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수응답을 한 것을 보면 향응·접대가 33.0%, 선물을 받았다 30.0%, 금전을 받았다 28.3%로 나타나 있다. 향응·접대, 선물, 금전 수수가 촌지의 3대 유형인 셈이다. 그 다음이 무료티켓 16.9%, 취재 관련 무료여행 13.9%, 취재와 관련 없는 외유성 여행 3.2%, 식사 0.8% 순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99년과 비교할 때 금전의 경우 18.9%에서 28.3%로 비교적 크게 증가한 반면 선물은 67.1%에서 30.0%로 절반이상 줄었다. 또 향응·접대는 39.5%에서 33.0%로 다소 줄었으나 취재관련 무료여행은 9.7%에서 13.5%로 약간 늘었다.

기자중의 28.3%만이 과거 1년동안 금전(상품권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거 촌지 수수가 만연했던 때에 비하면 그래도 개선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해야 할까, 아니면 나아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환상이었다고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현재 기자 사회에서 촌지가 어느정도 수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많다」 7.5%, 「약간 있다」 52.0%로 여전히 촌지 수수행위가 있다고 본다는 답변 비율이 59.5%였다. 「별로 없다」(37.2%)는 응답도 전혀 없다가보다는 유보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응답한 기자의 96.7%가 정도는 다르지만 촌지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별로 개선이 안됐거나 한때 언론계의 자정운동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1996년 언론계가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개정하면서 역점을 둔 분야의 하나가 언론인의 품위 조항이다. 신문윤리강령 7조 언론인의 품위 조항은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구체화한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15조 언론인의 품위 조항에서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사도 포함해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비취보면 기자들의 63.5%는 언론인의 품위에 관한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실천요강은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현존하는 기자단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의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된다고 해 공동취재 또는 친목을 위한 기자단은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부당한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출입처 취재원으로부터의 식사초대 및 리셉션 등은 취재활동의 연장이라는 한계 안에서 ‘부당한’ 향응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금지된 향응에 ‘부당한’이라는 한정적 수식어를 붙였다.

새 실천요강의 언론인 품위 조항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편집자, 기자 등 언론직 종사자에게 신문 보급 행위 및 광고 판매 행위를 금했다는 점이다. 언론사에 그런 행위를 언론직 종사자에게 시키지 말도록 금했을뿐 아니라 언론직 종사자도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언론윤리에서 언론인의 품위와 도덕성에 관한 윤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언론윤리의 폭은 넓다. 취재·보도·평론과 관련 된 윤리,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보호에 관한 윤리, 이해상충지침 등이 그것이다. 1996년에 대폭 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비교적 폭넓게 담겨 있다.

원래 1957년에 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1961년에 제정된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편집인협회가 만든 것을 신문협회와 기자협회가 추가 채택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권력의 언론자유 탄압 수위가 점점 높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언론자유 수호가 가장 중심적 가치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 강령은 1923년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가 채택한 언론강령의 ‘사실주의’와 ‘객관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구 신문윤리강령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사실주의·객관주의는 언론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한계도 지니고 있다. 특히 사실주의와 객관주의는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이 제공하는 발표를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해 진실을 왜곡

시키는 발표저널리즘의 폐해를 낳는 방패막이 구실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도 매카시사건의 홍역을 거치고 난 뒤 1975년 신문편집인협회가 언론강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취재에서 독자적 조사를 통한 진실보도를 강조하게 됐다. 이렇게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언론상황도 크게 바뀐데다 언론보도윤리에 대한 세계적 흐름도 변화한 것이 새 신문윤리강령 제정의 배경이었다.

우리 언론계에선 매년 신문의 날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신문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간 협의 회의를 갖는다. 95년 39회 신문의 날 준비회의에는 당시 편협부회장이었던 필자가 편집인협회 대표로 참석해 다음해 40회 신문의 날 및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시대에 맞게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제안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그 해 6월 세 단체가 추천한 언론계·학계·법조계·신문윤리위 관계자 7인으로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가 발족됐다. 이 위원회는 95년 7월 3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실태조사까지 거쳐 개정안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이 96년 2월 16일 편협·기협 및 학계 대표가 참석한 공청회에 부쳐져 거기서 나온 주로 언론계 의견과 편협운영위원회 및 개별언론사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4월 8일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 회장이 세 단체 이름으로 최종안에 서명, 선포함으로써 새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탄생했다.

당초 강령개정위원회가 만든 초안은 언론의 취재 현실보다 몇 발짝 정도는 앞서 있는 매우 이상적인 내용이었다.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일종의 자기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취재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현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는 이상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나 취재 자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앞서가서는 실행준칙으로서 실행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기회를 마련해 너무 이상적인 요소를 완화해 현실보다 한두 발짝 앞서가는 정도로 고쳤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가 상당히 있어 언론계 내에선 불만과 우려를 제기했

던 것도 사실이다.

신문윤리강령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의 실현을 전문에서 새로이 천명해 강령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로 삼았음을 밝혔다. 이는 ‘전후(戰後) 언론현장’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1947년 허친스위원회보고서가 권고한 원칙으로 오늘날 현대 언론이 다짐하는 가장 상징적인 보편적 원칙이다.

물론 구 강령도 「자유」와 「책임」 조항을 새 강령과 마찬가지로 제1조와 2조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병행시키고는 있다. 그러나 구 강령은 무게중심을 언론자유 수호에 두고 있다. 새 강령은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실공히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다.

언론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독립성의 보장이 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3조에 언론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그 논리적 전제임은 말할 것도 없다.

보도에는 정확성·객관성·공정성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보도나 평론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 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보이스 투 더 보이슬리스!(Voice to the Voiceless!)’ 를 구현하도록 했다(제4조).

이와 함께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각별히 힘쓰는 등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제5조, 제6조). 이는 높아진 시민들의 권리의식으로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늘어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제7조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을 두어 언론인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 실천요강은 과거의 ‘보도기준’ 까지 흡수해서 규정함으로써 세부 규제부문이 28개에서 63개 부문으로 확대됐다. 1997년 한국언론연구원의 기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언론인이 32.6%에 이르므로 실천요강의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강령의 규정을 좀더 부연 설명하면서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기여를 다짐하고 있다.

제2조 <취재준칙> ‘신분사칭·위장 및 문서 반출금지’를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어 언론계의 관례나 학설을 조문화하고 있다.

‘재난 등 취재’에 관한 규정의 신설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의 나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병원 등의 취재’에 있어서도 신문을 밝히고 비공개지역에 들어갈 때나 환자를 취재할 때 허가 받도록 한 것 역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의 교훈에서 나온 것이다.

‘전화취재’ 때 자기 신문을 밝히도록 했으며, ‘도청’은 비윤리를 넘어 위법이며, ‘비밀촬영’ 역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나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삼가도록 했다.

새 실천 요강은 취재행위가 보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언론 활동임을 분명히 해 취재행위 자체를 직업윤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취재가 보도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종속개념으로 이해될 때 기자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통념적 생각을 은연중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통념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취재가 법과 윤리의 한계를 일탈하더라도 그것은 보다 숭고한 보도의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위케 함으로써 일탈 취재를 오히려 양산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행위를 취재→기사작성→편집→보도로 구성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요소로 본다면 그 내재적 윤리성에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 원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 <보도준칙> 기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 해야 하는 것은 언론의 상식이고 ‘미

확인 보도'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경우 그 점을 밝혀야 한다. 음란하거나 잔인한 표현을 삼가야 한다. 취재원이 주는 보도자료 등은 사실의 검증을 통해 진실할 때만 보도하도록 했고,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탐사할 의무를 부여 했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등 이밖의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하거나 평론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취재 또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취재원은 가급적 밝혀야 하고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은 취재원의 익명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익명의 이유와 기사의 진실성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신분암시를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해 보도해서는 안되며 제3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발설자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하겠다는 제의는 수용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이 심층 배경설명(background briefing)을 하는 경우 익명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의 소속처와 일반적 지위를 밝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비보도조건(취재원이나 내용)으로 취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이에 동의한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지키도록 했으나, 다만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6조 <보도보류시한> 취재원과 보도를 일정 기간 보류하기로 약속한 경우(embargo) 이를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경칭을 써야 하고 피의자가 정신 이상자이거나 정신 박약자인 경우 곧 석방될 사람이므로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하며 성범죄보도의 경우 무관한 가족이나 미성년자의 신원자료도 밝힐 수 없도록 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되나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통신사 기사와 자사 기사의 구분을 철저히 하고 타사의 것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해서도 안 되도록 했다.

제9조 <평론의 원칙> 평론은 진실을 근거로 해야 하며 공정하고 균형과 절제를 지키고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경계해야 한다. 논설은 정론적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논설이 특정인을 비판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새 실천요강은 구 요강에 없는 「정치적 평론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 즉 제9조 2항은 “사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는 등 신문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정치적 평론의 자유를 전향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 반쪽짜리 자유로 후퇴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란 조건을 붙임으로써 선거 같이 중요한 민주정치의 행사에서 신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평론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이란 단서는 언론인들이 통합선거법의 관계조항 폐지운동을 벌여 사문화시켜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10조 <편집지침> 제목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음란·잔혹·선정적인 편집을 못하도록 했고 기고기사의 경우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사를 고치치 못하도록 했다.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면배치, 크기 등 내용을 바꿔선 안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있는 것을 써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사와 무관한 사진을 쓸 경우 그 까닭을 밝혀야 하며, 사진 조작은 금지하도록 했다.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부정확한 보도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로 개인이나 단체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들어가는는 안 되며, 공인이 아닌 사람의 사생활·사유물 등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할 때도 절제를 지켜야 한다. 남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보호자 승낙 없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인터뷰하거나 촬영해서는 안되며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필요한 보도제한 등 모든 협조를 다하도록 했다. 폭력·음란·약물사용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어린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며 어린이나 그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도록 했다.

제14조 <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이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 및 증권 정보에 관해 보도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기사를 썼거나 곧 쓸 증권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거래 등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그러나 새 강령과 실천요강도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보도지침, 선거보도지침, 북한보도원칙, 그리고 이해상충지침의 세부사항(예: 언론인의 공직후보나 정당가입조건)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해선 윤리강령이나 실천요강보다는 개별 언론사가 마련할 몫으로 남겨 놓았다.

그렇다면 언론사들과 언론인들은 과연 얼마나 언론계가 스스로 제정하고 준수를 서약한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한국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직업윤리를 어떻게 인식하며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관훈클럽의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언론인 및 취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한국언론재단이 그 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온 조사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아 니할 수 없다.

한국 언론인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와 보도의 준칙을 잘 지키지 않을 뿐더러 취재와 보도행위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요강 제3조 취재준칙 제1항은 취재를 위해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정보를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① 편지나 사진과 같은 개인의 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기자는 응답자의 약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의 절반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② 기업이나 정부의 비밀문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나 ③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응답은 약 30% 남짓이다. 기자의 대다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언론연구원)

또한 취재준칙 제5항 도청 및 비밀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48%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9년 한국언론재단)

둘째,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제2항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처음부터 미확인 내용을 밝힌다는 응답자는 약 18%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미확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기사의 행간에서 미확인 내용을 적절히 밝힌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기사의 행간에서 밝힌다는 것은 예컨대 “~라고 알려졌다”거나 “~ 소식통에 의하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보도준칙 제5항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언론인들의 약 39%는 일단 발표내용을 충실히 보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자료가 검증될 때까지 기사 전체를 보류한다는 응답률은 약 11%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언론의 발표저널리즘(hand-out

journalism)의 현실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

셋째, 실천요강 제5조 제4항 취재원과의 비보도약속(오프 더 레코드)의 준수를 규정한 조항을 지킨다고 응답한 언론인은 약 50%였고, 나머지 절반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실천요강 제6조는 보도보류시한(embargo)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 60%의 언론인들이 취재원과의 신뢰를 위해 일반적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존중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약 40%는 공익성을 엄격히 따져 결정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보도보류요청이 많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넷째, 실천요강 제8조는 표절을 금지하고 있고 제1항은 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강조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게재 및 사용방법에 차별없이 통신기사의 인용부분을 모두 밝힌다는 응답률은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언론은 통신사의 기사를 거의 일상적으로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제12조 사생활 보호, 제13조 어린이보호 등 조항은 모두 인권존중 준칙들이다.

첫째, 실천요강 제7조 제1항은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헌법상 보장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일상적으로 침해(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무려 83.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7조 제5항과 제6항은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조항도 잘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5%의 응답자들이 현행범과 공인은 물론 공익상 필요하면 누구나 촬영, 보도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둘째, 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및 제12조 사생활보호 조항의 준수실태에 대해 언론인들의 67.5%가 그러한 조항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현황을 보면 침해유형 가운데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이 그렇게 빈번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언론인들은 △ 언론사간의 지나친 경쟁(41.2%) △ 언론인의 윤리의식 결여(17.6%) △ 마감시간에 따른 압박감(16.0%) ④ 언론인의 전문성 부족(13.5%) 순으로 답하고 있다. (2001년 한국언론재단)

셋째, 실천요강 제13조 제1항은 어린이 취재보도에 있어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기타 보호자의 승인없이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준수한다는 언론인들은 약 2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나 촬영을 한다고 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13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신원만 밝히지 않는다면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없이도 인터뷰나 촬영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요강 제15조 제4항 기자의 광고판매·보급행위 금지조항의 준수 여부에 대한 2000년 위원회전문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언론인들의 약 70%가 회사측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각 회사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신문을 보급하거나 광고를 수주해 오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언론인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IMF 관리체제하에서 신문사의 광고 수주상황이 악화된 뒤로 그런 일이 늘었다.

기자들이 자기가 만든 신문을 친척이나 친지에게 구독권유를 하는 정도는 신문윤리 실천요강 위반으로 문제삼을 필요가 없겠지만 각 회사에서 연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기자들이 출입처라든가 언론인으로서의 보도활동을 이용해 신문 판매에 나서게 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이 점은 신문사와 기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취재준칙, 보도준칙,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어린이 보호,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언론인의 품위 유지 등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모두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언론의

직업윤리는 한림대 유재천교수의 말처럼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허위고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윤리강령은 신문과 방송이 각각 다른 준거를 갖고 있다. 신문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율적인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정한 것과는 달리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규칙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방송심의 규정의 내용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위반사례에 대해 법률에 의해 시정 명령과 벌칙(사과·정정·중지·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윤리강령과 다르다.

신문윤리강령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실천이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고 서약,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신문윤리위에서 공개 경고 이상의 제재를 가하면 해당 신문사는 물론 모든 신문이 그 사실을 보도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공개경고를 받고도 묵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되면 신문윤리위의 자율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결국 독자들은 언론 내지는 언론계 스스로의 자율정화 기능을 못민게 돼 법적인 제재, 타율적 제재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결국 언론에 대한 타율 규제, 타율적 개혁을 자초하는 빌미가 될지 모른다.

첫째 언론윤리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선 우선 언론인에 대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내면화가 시급하다. 신입기자들은 물론 중견기자들에 대해서도 언론윤리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적어도 언론인이라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물론 각사의 윤리준칙 내용을 철저하게 숙지, 실천토록 해야 한다. 물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지키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보편적이고 명분이 있다면 윤리강령을 지키지 못할 규범으로 선반위에 모셔두기 보다는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 점

은 편협에서 공론을 모아 신문협회 및 기자협회와 진지하게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실천 여부를 따져 실천을 독려하는 기관이 신문윤리위원회인데 그 결정이 너무 솜방망이란 비판의 소리가 높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조치는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정정, 취소, 사과,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인데 대부분이 주의, 비공개경고이고 공개경고는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이상은 아예 없다. 공개경고 이상의 제재조치에 대해선 당해 회사는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도하게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계가 외부에 대해 언론윤리에 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언론계 6명, 국회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윤리위 추천 2명으로 돼 있는 윤리위의 구성을 언론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윤리위의 제재도 '주의' 정도에서 맴돌지 말고 공개경고 이상의 제재 비중을 높여 나가는 과감한 변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편집인협회보, 기자협회보, 미디어 오늘 등 언론 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들의 언론윤리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일이다. 적어도 윤리위의 공개경고 이상의 제재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 이들 신문들이 그 사실을 빠짐없이 보도하고 비판한다면 그런 행태는 사라질 것이다. 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위반행위에 대해 비판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윤리위 활동을 고무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현재와 같은 언론윤리 실천수준으로는 언론과 언론인의 자율규제, 자율개혁 의사와 능력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타율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은 스스로 만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체질화에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인이 직무상 지켜야 할 윤리준칙이지만 언론인과 언론사가 보도로 인해 민사상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어느 쪽에 과

실이 있느냐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된다.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잘 지켰다면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돼 과실이란 귀책사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윤리준칙을 잘 지키면 언론은 법적으로도 강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점을 언론인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